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6. 1. 28.(목) 09:35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최성준 위원장
김재홍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제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35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천지현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천지현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 국민의례

- 천지현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6년도 제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지난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은 속기록 작성 및 위원님 확인이 끝난 후에 다음 회의에서 접수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그리고 1월 27일 있었던 제5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3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상정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다채널방송(MMS) 도입방안」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가> ‘ 「다채널방송(MMS) 도입방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십시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채널방송(MMS) 도입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디지털 압축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既) 지정된 주파수대역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다채널방송 서비스(MMS)가 가능해지고, 무료 보편적 방송서비스 확대를 통한 시청자 채널선택권 강화 및 사교육비 절감 등 국민복지 향상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MMS 본방송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EBS2 시범서비스 결과입니다. 시범서비스는 EBS-2TV를 통해서 전국에 매일 19시간 방송되었는데 초·중등 학습 및 영어교육 프로그램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술안정성 면에서 볼 때 현재 보급된 디지털 TV를 통해서 별도 셋톱박스 없이 시청 가능하며 객관적 화질평가가 업계 평균을 상회하고, 시범서비스 개시 후 접수된 수신 상태 관련 민원이 모두 해결되어 기술적 안정성이 검증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제적 효과 면에서는 연간 약 1,750억 원의 사교육비 절감효과가 추정되었습니다. 시청자 인지도 면에서 EBS2 채널 인지도는 69.3%, 사교육비 경감 역할에 대한 기대는 78.4%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MMS 도입 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입대상사업자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입니다. EBS는 낮은 지상파 직접수신율에도 불구하고 초·중학 학습 및 영어교육 콘텐츠를 편성하여 EBS1의 보완채널로서 사교육비 절감효과 등 공익적 역할이 크고 MMS 도입 목적인 무료 보편적 서비스 확대에 맞게 충

실히 운영되었습니다. 상업광고 없이 교육적 내용으로 편성을 차별화하여 시범서비스를 하고 있어 유료방송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한편, 기술적 안정성도 검증되고 시청자의 채널인지도와 수요가 높으므로 EBS2 채널의 본방송 전환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EBS 이외의 다른 지상파방송에 대한 MMS 허용여부는 현 단계에서 검토하지 않습니다. EBS2 MMS 채널의 법적지위는 부가채널입니다. MMS 채널을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가 기(既) 지정받은 주파수 대역 내에서 디지털 압축 기술을 활용하여 추가적으로 운용하는 채널로 정의하여 방송법에 '부가채널'로 법적지위를 신설합니다. 부가채널 허용방식은 승인인데 MMS 채널의 사교육비 절감 등 공익적 필요성, 방송 및 광고시장에 미치는 영향, 재원조달계획의 공익성 등의 항목을 심사하여 신규채널 허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부가채널 승인의 효력은 EBS1 채널 허가 효력에 종속되고 유효기간도 EBS1 채널 허가 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MMS 채널의 수는 HD 1개 채널이고, MPEG-2 압축 기술을 이용합니다. MMS 기술표준은 기술적 안정성이 검증되고 셋톱박스 추가 없이 현재 보급된 수상기로 전 국민이 직접수신 가능한 MPEG-2 방식을 채택하고,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지정된 주파수 대역 내에 HD채널 2개까지만 안정적 송출이 가능하므로 추가되는 HD채널은 1개가 적당합니다. 광고규제와 관련해서는 상업광고 허용이 방송광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우려와 방송의 공익적 역할 제고라는 EBS MMS 도입 목적을 고려하여 상업광고를 금지합니다. 한편 신규 MMS 채널 이외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재방송하는 경우에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광고유형에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되, 재방송 편성비율의 제한 방안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협찬고지는 금지하되 신규 MMS 채널 이외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재방송하는 경우에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고, 재방송 편성비율의 제한 방안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편성규제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실험적인 프로그램 편성을 유도할 필요성을 고려, 신규 애니메이션 비율 등 기존 편성규제는 완화할 것을 검토하고 MMS용 신규 콘텐츠에 대해서는 편성의무화를 검토하게 됩니다. EBS2 채널이 EBS1에 부가된 서비스라는 성격을 고려하여 재난보도 및 교육뉴스에 국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무재송신과 관련해서는 낮은 지상파 직접수신을 하에서 신규 채널의 시청자 도달률 제고 필요성과 의무재송신에 대한 유료방송사업자의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BS2 시범서비스의 유료방송 재송신과 마찬가지로 사업자들 간 자율적 협의 사안으로 두되 방송통신위원회가 원활 재송신 협의를 지원하게 됩니다. 기대효과로는 먼저 무료로 제공되는 EBS MMS 채널이 추가됨으로써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 확대가 기대됩니다. 또한 EBS2 채널의 사교육비 절감효과가 매년 약 1,750억 원으로 추정되어 본방송 도입 시 국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6년 중에 EBS MMS 채널 법적지위 부여, 채널운용과 관련된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편성고시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지상파 MMS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부터 여러 차례 논의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된 안건은 나름 의견이 모아진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것을 고치자, 이것을 놓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수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모아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 의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전제 하에서 여기에 반영이 되지 않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목은 다채널방송 도입방안인데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현재 시범 서비스 하고 있는 교육방송의 다채널 방송에 대해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래서 EBS를 제외한 여타 지상파 방송에 대한 MMS 허용여부는 현 단계에서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안건 논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상파 MMS 기술은 뉴미디어 기술은 아닙니다. 이미 10년 전, 훨씬 그 전에 전 세계 여러나라에서 지상파 디지털 전환할 때 직접수신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유료방송 이용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무료 보편적 서비스로서 지상파방송을 많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MMS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상파 디지털 전환할 당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MMS를 같이 도입되지 못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몇 개 되지 않은 나라 중 하나일 것입니다. 외국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MMS 도입한 사례를 보면 국가기간방송 내지는 대표적인 공영방송사들의 MMS 정책은 반드시 수립해서 추진이 됐습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자세한 내용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디지털 전환할 때 해당 국가의 대표적인 공영방송사들은 MMS를 도입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박진희 방송정책기획과장

-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NHK에서 하고 있고, 미국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영국, 일본, 프랑스 대표적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미국에 하나 있는 공영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 박진희 방송정책기획과장

- PBS에서 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KBS1에 대해서는, KBS2까지 제가 말씀드리는데는 아닙니다. 국가 기간방송이고 공영방송의 대표적인 채널인 KBS1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MMS 관련된 정책방안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KBS가 경영진이 교체되면서 이 MMS 정책방안에 대한 입장을 재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이 저희들에게 전달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라도 국가기간방송 MMS 실시계획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EBS 운영과 관련해서 4페이지를 보면 광고규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업광고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 현재 EBS 본 채널도 일부 부적절한 성인 대상 광고품목들은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MMS에 대해서 지상파 방송광고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광고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밑에 보시면 협찬고지 금지가 있지 않습니까? '협찬고지를 금지하되, 신규 MMS 채널 이외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재방송하는 경우에 예외를 두는 방안' 검토입니다. 그러면 협찬고지를 금지하는 이 조건이 방송법에 규정이 됩니까, 시행령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고시나 허가조건에 들어갑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협찬고지 금지를 넣게 되면 시행령 단에서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현재로서는 시행령 단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EBS MMS를 도입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교육비 절감과 사회교육 기능과 같은 공익적 목적이 아닙니까? 그리고 새롭게 MMS에 적용되는 프로그램 제작이나 편성계획이 되겠지요. 이런 것이 신규로 의무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자연스럽게 프로그램들을 제작하고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EBS 사정으로 보면 현재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운용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어렵다는 것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MMS는 전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면서 재원에 대해서는 모든 조달 통로를 막아버린다는 것은 배치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논쟁을 하는 것보다도 현재 지상파 광고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협찬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하게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이런 생각들은 나중에 법을 개정하거나 구체적으로 사업자를 승인할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3페이지 MMS 도입 방안을 보면 'EBS2는 낮은 지상파 직접수신율(6.7%)'입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현재 지상파 6.7%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직접수신을 하는 가정은 안테나를 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지금 알고 있는 직접수신율은 어떻게 보면 커버리지 라는 개념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유선방송을 선택하지 않고 직접 수신하는 것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유선방송 수신료 보통 1만원 안팎,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그것을 내지 않고 안테나를 설치해서 직접 수신하는 가정인지, 하여튼 저는 지상파 정책을 수립할 때 직접수신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 중 하나가 EBS의 MMS인데 콘텐츠가 중요하기 때문에 채널 하나 늘려주는 것이 뒤에 사교육비 절감효과, 공익적 역할인데 콘텐츠 수신율이 중요한 것이지, 직접수신율에 근거해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EBS2 늘려주어서 우리가 얻을 것은 사교육비 절감효과와 공익적 역할인데 이것이야말로 콘텐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콘텐츠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직접수신율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굉장히 모순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생각이 계속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 다른 지상파방송에 대해서 MMS를 늘려 주는 것에 대한 허용여부는 검토하지 않았습시다만 그러나 다음에 어떤 상황이 MMS를 더 늘려주는 상황이나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상파들이 콘텐츠를 잘 만들고 거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시청자들의 요구가 있으면 그때는 검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MMS라는 것이 무료 보편적 서비스 확대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직접수신율 자체가 높아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향후 언제 검토하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신규 MMS 채널로서 공익적 콘텐츠를 제작할 준비가 됐을 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면 그것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지금 국장님도 바로 직접수신율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는 그런 답변인데 현 단계에서는 그렇지만 지상파들이 콘텐츠를 잘 만들면 직접수신율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직접수신율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콘텐츠 수신율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콘텐츠 수신율이라고 공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만 콘텐츠에 대한 선호도, 시청률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그것에 대해서 많이 선호한다면 나중에 참고 정도 할 수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이 직접수신율도 범규에 있는 용어는 아니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그렇긴 합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이것은 학계에서 전문가들이 또 정책당국에서 차용해서 쓰다 보니까 일반화되었고 근거자료가 된 것인데 콘텐츠 수신율도 이것 못지않게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고 연구자들에게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현재 우리가 적어도 수년간 유료방송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고 채널이 포화상태, 채널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종편 4사를 허가해 줌으로써 너무 넘친다, 광고시장이 어려운데도 채널이 너무 많아졌다는 비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료방송 시스템을 통해서 수신을 하기 때문에 지상파들의 무료보편 서비스의 직접수신율이 낮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지상파의 직접수신율, 유료방송을 통한 수신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EBS에 MMS를 하나 더 허가해 주는 것은 바로 유료방송을 통하지 않고 지상파를 직접 수신해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받아보는 그런 국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무료보편 서비스다, 그런 차원에서 차후에 어떤 지상파들에게 MMS를 허용할 것인가 하는 것도 콘텐츠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것 연구용역 과제도 진행 중입니까? 나왔습니까?

○ 박진희 방송정책기획과장

- 전년도에 법 개정 관련된 연구용역이 진행됐고 1월 중에 곧 나올 예정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1차 연구용역이 끝났습니까?

○ 박진희 방송정책기획과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러면 저도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만 향후에 허용여부를 더 넓혀 주는 것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수신율뿐만 아니라 콘텐츠 수신율도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이 문제에 대한 연구용역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기회가 되는 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안전 별첨에 도입 방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추진배경에 MMS가 무엇인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보고한 안전, 이것이 결국 도입 방안 전문의 요약본이지 않습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이 보고서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안전 본문의 추진배경에 MMS가 무엇인지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전체 전문에 보면 그것이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맞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MMS 이야기만 나오지 이것이 멀티모드서비스(Multi-Mode-Service)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시범서비스한 결과 경제적 효과가 1,750억 원이 된다고, 사교육비 절감효과가 그렇게 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는데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에 EBS가 들인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실질적으로 들인 비용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EBS 프로그램을 하면서 전용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썼고, EBS2를 위한 전용프로그램은 전체 방송시간의 약 3%를 그 당시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15년도에는 돈을 약 12억 원 투자를 했습니다. 그것 외에는 교차편성이라든지 재방송 등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오늘 보고서에 이 시범 서비스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장비가 됐든 콘텐츠, 프로그램 제작이 됐든 들어간 비용을 개략적으로 넣으면 어떨까, 그리고 앞으로 예산 당국과 협의할

때도 비용·효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해서 설명을 잘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입 방안 중에 도입대상사업자는 EBS이고, 'EBS 이외의 다른 지상파방송에 대한 MMS 허용여부는 현 단계에서 검토하지 않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오늘 보고 안건으로 접수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보도 자료를 냅니까, 설명을 합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보도 자료도 내고 이후에 법안 입안을 추진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 생각에는 이 내용을 보고 그리고 또 전문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질문이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언급한 문장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내지는 위원님들 간에 많은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얼핏 부위원장님이나 고 위원님 말씀 중에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전영만 국장께서 또 몇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문장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에 설명이 더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생각을 한 끝에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나 하면 그것이 이 뜻이지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래서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들을 굳이 덧붙일 필요가 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상파 방송은 뭐냐?', '현 단계라는 것이 뭐냐?', '검토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저는 이 뜻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 이해가 잘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기주 위원님, 안건 자체, 문구 자체를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동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만, 왜 소수 의견에 대해서 봉쇄를 하시려고 합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봉쇄가 전혀 아니고 이렇게 위원님들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부연설명처럼 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것이지요. 저는 고 위원님이 의견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 보고안건대로 의견이 모아졌지만 이 안건에 다 반영하지 못하는 개별 위원들의 의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남겨 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굳이 국장님께서 나중에 설명할 필요는 없고, 어차피 제 의견은 속기록에 남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고민되고 논의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정책의 완결성을 위해서 훨씬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의견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의 사건이 어떻다는 것을 밝히지 말자는 말씀이 아니고, 전영만 국장이 아까 설명을 하는데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아서 방송통신위원회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이것이 굳이 설명이 필요하겠느냐?'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것이지, 개인적인 이야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 없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저는 절차가 궁금해서 여쭙 보겠습니다. 법으로 제정이 되고 법적 지위가 부여되고 법령이 완비가 되면 현재 EBS2의 시범서비스 기간이 언제 종료되는 것으로 일정이 나와 있습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종료가 따로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범서비스만 적시한 것이 있고, 작년 2월 11일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종료가 된다면 본방송으로 전환한 그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본방송이 언제쯤 실시될 것이라는 것이 법령 정비와 맞물려 있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법령이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승인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법령이 만들어진 다음에 승인절차를 거쳐서 본방송으로 넘어가지요? 그러면 빠르면 올해 안에 실현 가능해집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그것이 올해 EBS 예산 편성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2016년 EBS MMS 예산 20억 원이 별도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본방에 대비해서 편성내용도 중요한데 거기에 어떤 내용을 담으라는 가이드라인도 마련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율적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현재는 심사할 때 그와 같은 내용들을 저희에게 심사 신청을 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칠 것이고, 법령에 심사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자료가 오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합당하면 승인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리고 자료에 보면 다른 타 방송에서는 광고가 굉장히 비상한 관심입니다. 광고를 허용하지는 않지만 기술적으로 분리를 할 수 없는 광고는 재방송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방송이 되게끔 그런 취지로 입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재방송은 무조건 다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한정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재방송 비율을 정하게 되어 있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그런 것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것이 법령에 담기는 것입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그것에 대해서는 재방송 비율을 법령 자체에 할지, 아니면 고시에 할지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담당 국에서 따로 검토하게 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잘 마련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조금 정리를 하자면 재방송하는 경우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광고면 소위 말하는 프로그램 광고는 기술적으로 분리가 가능한 광고임이 명백하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프로그램 내에 있는 광고를 분리할 수 없는 광고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예컨대 간접광고 같은 그런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고삼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협찬고지 금지와 관련해서 협찬도 여러 가지 형태의 협찬이 있지 않습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맞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예를 들어서 제작비 협찬 같은 것은 사실상 광고와 차이가 거의 없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다만, 광고처럼 광고시간을 정해서 광고 프로그램이 안 나간다는 것뿐입니다. 실제로 제작비 협찬의 경우에는 광고와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작비 협찬고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봐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소품협찬, 장소협찬은 광고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은 또 별도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물론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제작 재원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의미에서 한 번 검토해 볼 여지는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MMS 채널의 정의에도 있듯이 이 MMS 채널은 무료보편적인 방송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료방송을 통하지 않고 시청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당연히 MMS로 훌륭한 콘텐츠를 방송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방송을 하지 않도록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고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어느 방송사도 소위 시청자들에게 나름대로 그런 의미를 갖는 제대로 된 콘텐츠를 광고 없이 이렇게 방송을 하겠다는 계획을 표명한 곳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없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 단계에서 그것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자꾸 직접수신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공영방송의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MMS가 도입이 되어 있다”라고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MMS를 도입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의 경우에 보면 직접수신이 우리나라보다 배 이상 훨씬 더 높지요? 40%까지 가는 나라도 있고….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그 정도 갑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이 직접수신을 언급도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할 내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방송 관련해서 저희가 안전을 논의할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지상파의 직접수신율과 무료 보편적 서비스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제안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방송정책 및 제도에 있어서 고전적으로 원칙처럼 내려오는 그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만 별도로 저희가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개별적인 정책이나 제도를 논의할 때 꼭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봐서는 위원님들 간에도, 그것에 대한 개념에서부터 그간의 많은 시장 변화, 기술 변화에 걸쳐서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가져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한 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 안전은 많은 논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보고안건 내용에 대해서는 다들 찬성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접수하겠습니다.

7.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최근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월요일자 한겨레신문과 뉴스타파 보도 그리고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과 보수 성향 인터넷 매체 편집책임자 간 식사 자리에서의 대화내용이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저는 황당함을 넘어서 큰 충격을 주는 내용이라고 정리해 봅니다. 그 내용들은 지금 대부분 언론을 통해서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백종문 본부장이 “2012년도 과업 과정에서 해고된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에 대해 증거가 없는 것을 알고도 해고했다.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 해고를 했다”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백 본부장은 <PD수첩>이나 <시사매거진 2580>의 출연자의 교체 등을 거론하면서 프로그램 편성 등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녹취록에서 백 본부장은 MBC 내부 통제를 위해 교양제작국 해체를 비롯한 조직 개편과 경력직원 위주의 채용을 통한 노조 압박과 인력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인터넷 매체에 대한 MBC 내부 정보제공과 경제적 지원방안 등 여론 호도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화요일 MBC 사측에서는 “관련 내용이 임의로 편집되었다. 그리고 발언 내용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다소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마치 근거 없이 해고했다는 의미로 왜곡하고 있다. 일부 매체의 비정상적인 보도행태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명예훼손에 대해 가능한 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4년 4월과 11월 두 모임을 녹음한 파일입니다. 제가 파일은 못 들어봤는데 녹취록 분량이 208페이지 되는데 이것은 전부 다 읽어봤습니다. 녹취록 전체를 살펴보면 MBC 사측이 주장한 내용, 즉 임의 편집, 의미 왜곡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해고 관련해서 직접적 증거가 다소 충분하지 못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백종문 본부장은 매우 단호하게 “아무런 증거도 없이 소송 비용이 얼마든 심지어 소송에서 질 것을 알면서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해고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이 자리가 과연 사적인 모임인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이 자리는 동문회나 향우회, 계모임이 아닙니다. 녹취록 내용을 보면 MBC 노사 분쟁 등 사안에서 특정 인터넷 매체가 노조를 공격하고 사측 입장을 지지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MBC와 특정 인터넷 매체 간 업무 협조와 공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명백히 업무의 연장선상이었다고 판단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고 위원님, 아까 말씀 시작하시기 전에 중간에라도 의견 있으면...

○ 고삼석 상임위원

- 잠깐만요. 앞부분만 조금 말씀드리고...

○ 이기주 상임위원

-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기조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간단히 해 주시면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저는 일부 매체의 비정상적인 보도행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법적 조치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MBC 경영진 스스로 진상을 밝히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광한 현 MBC 사장은 해고 결정 당시 인사위원장을, 백 본부장은 인사위원을 맡고 있었습니다. 공영방송 MBC 사장과 고위 임원으로서 법적 책임과 별개로 이들이 져야 할 도의적 책임의 크기와 무게를 본다면 사퇴를 해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또한 시대착오적이고 대단히 편향적인 방송관, 노사관,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에 의해 선임되어 공영방송 MBC의 중책을 맡고 있는 현실에 대해 큰 자괴감을 느끼고, 공영방송 MBC와 이사회인 방송문화진흥회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변명의 여지없이 시청자인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서는 어제 주요 업무계획 발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해고와 관련된 노사문제이고 노사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치는 현재까지는 없다고 판단한다”라고 말씀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이 입장이 여전히 유효합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이번 녹취록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노사 문제가 아니라 편향되고 왜곡된 정치적·이념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공영방송 MBC를 장악하고 통제하려는 음모이자 공작의 일부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핵심수단 가운데 하나가 해고 등 노무관리입니다. 경영진에 비판적인 인력을 재배치하고 경력직원 위주로 채용하고, 그리고 공영방송의 핵심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교양제작국 해체와 같은 조직 개편, 그리고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개입, 또한 보수성향인 인터넷 매체와 유착을 통한 여론 호도 등 다양한 전략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서 저는 MBC 정상화, 정당한 경영권 행사라는 경영진의 주장이 허위였다, 명분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둘째, 노사문제다, 경영개입이다 이런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제 3기 방송통신위원회 임기 동안 공영방송은 더욱 망가질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녹취록 내용과 MBC 경영진의 행태를 보면 공영방송 내부의 자체 규제 시스템이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또한 공영방송에 대한 공적관리와 규제 시스템이 마비되

있거나 붕괴되어 무용지물이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녹취록 공개로 인해서 MBC 경영진은 공영방송 경영진으로서의 신뢰와 권위를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락시켰습니다. 한마디로 신뢰와 권위가 부도난 상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연 공영방송 MBC가 사장과 본부장 등 소수 경영진의 소유물인지, 사실 사기업도 이렇게 운영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과 같이 소수 경영진이 공영방송을 마음대로 경영하도록 방관하고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제 역할을 못 하기는 MBC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께서는 긴급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부 이사들 주장에 대해서 “녹취록은 시급한 사안이 아니다. 들어서 알고 있다. 부산 방문 일정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보도를 보고서 과연 법에서 규정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왜 이분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직무유기를 넘어서 모럴해저드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특히 방송문화진흥회의 2016년도 방송진흥사업 공모 광고 집행 내역을 보면 특정 언론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 iMBC와 대학내일을 제외하고는 5개 정도가 이념적으로 한쪽에 편향된 매체입니다. 물론 이번에 문제가 된 이 인터넷 매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녹취록 내용대로 경제적 지원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대선공약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이 정부 출범 초기부터 추진되었다면 오늘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공영방송 내부 운영 시스템과 이를 관리·감독하는 공적 규제 시스템에 문제가 드러난 만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께서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지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제도 밤늦게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적책임·공공성과 공익성 구현의 최종 책임자이자 그것이 우리 조직의 존립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진상규명을 해야 하고 필요시 행정조치를 해야 합니다. 저는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 ‘이법 또는 허가조건, 승인조건, 등록요건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 근거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명확성의 원칙이나 비례성의 원칙 이러한 부분들을 유념해야겠지만 명시적 규정과 조건이 없다고 할지라도 방송사업자에게는 재허가 당시에 제출했던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허가권자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에 의해서 저는 MBC가 재허가 당시에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MBC가 지난번에 제출했던 재허가신청서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서약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법인은 재허가 신청서류에 기술한 지상파 방송사업 운영계획 및 방송발전 지원계획 등이 국민과 정부와의 공적약속임을 서약하며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방송의 공적책임이나 공정성·공익성 관련 실현계획, 편성의 공적책임 및 공익성 실현 계획, 그리고 조직 운영 방안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위원회가 허가권자이고 또 규제기관으로서 사업자가 재허가 당시에 제출했던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또한 이번 녹취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나 MBC의 현재 경영 현황이 이러한 사업계획서를 위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3년 MBC 재허가 권고사항 이행 점검 차원에서 제 기억으로는 지난 2014년 말에 MBC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다. 당시 우리 위원회는 2012년 파업에 따른 조직 안정화 관련 재허가 권고사항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자고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녹취록 내용이

나 현재 MBC 내부의 상황을 보면 여전히 이러한 2013년 MBC 재허가 권고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필요시 권고 등 행정조치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경우, 즉 MBC 관리·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는 저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권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문화진흥회로 하여금 MBC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해야 합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의 입법 목적이 MBC의 공적책임 구현과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 문화 진흥, 그리고 공공복지 향상 이바지에 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비롯해서 이사들은 이 사안이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긴급이사회라도 소집을 해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프로그램 편성 등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부분은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방송법 제4조제2항은 방송편성에 관한 외부간섭의 배제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3항은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편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으로서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이 없는 백 본부장이 특정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편성과 출연진 선택에 관여한 것은 법에 명시된 자율적인 편성 보장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해당 법 조항의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지만 위법사항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녹취록상 드러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MBC에 대한 편성권 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촉구하는 등의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다고 하셨지요?

○ **이기주 상임위원**

- 고 위원님 오늘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서 왜 하신 것입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하신 동안에 한 번 저희 설치법을 봤습니다. 저는 고 위원님보다 훨씬 짧게 제 의견을 이야기하겠지만 차분하게 들어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제2조 운영원칙에 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 이용자의 복지 및 보편적 서비스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방송통신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에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의결사항 제12조제1호부터 제29호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안조정팀장님 여기 잠깐 마이크 있는 데로 와 주십시오. 안건이 심의·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거나, 보고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고사항도 결국에는 심의·의결을 하기 위한 선행절차 개념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천지현 의안·정책관리팀장**

- 예, 입법예고 등이 필요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사전에...

○ **이기주 상임위원**

- 최종적으로 나중에 의결하기 위한 선행절차로...,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앞에 원론적인 방

송통신위원회의 임무를 이렇게 규정한 것도 있지만 결국 심의·의결사항 안에 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편의상 기타 안건이라고 회의 진행할 때 들어가긴 하지만 결국은 기타 안건도 심의·의결사항 그 범주 내에서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은 의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 위원님께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저는 다섯 분의 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함에 있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하도록 되어 있는 안건을 논의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고 위원님께서 방송법 제99조나 방송문화진흥회법을 인용하면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제99조제1항제2호도 보니까 지금 MBC의 그런 사안과 관련된 규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위원들 간에 서로 의견이나 견해, 생각이 전혀 다른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무슨 액션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충분히 사전에 논의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전체회의 기타 안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저도 어제 위원장님이 기자 브리핑시 답변하신 것을 듣긴 들었지만 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금년도 계획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우리의 의지를 밝히는 자리에서 그런 질의답변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회의에서, 이런 법에 규정된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위원회 회의 운영에 있어서, 개별 위원들께서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서 개인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저는 여러 가지로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전체회의에서 그런 의견을 이야기하고 논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처럼 또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아주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여기에서 더 이상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고삼석 위원님께서 저에게 무슨 조치를 요구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법 제99조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허가조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 저희가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말하는 허가조건 위반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을 할 것, 내용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그 사업계획서의 일부라도 이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조사를 하기 시작하면 과연 방송의 자율성·독립성이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거기에서 허가조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의 의미를 그렇게 포괄적으로 넓게 해석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4조제2항에...

○ 고삼석 상임위원

- 제3항을 말씀드렸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제4조제3항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부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선언적인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율적인 편성이라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주관적인 면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방송편성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매번 자율적인 방송편성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아보겠다고 해서 편성을 조사하기 시작하면 이 역시 방송의 자율성·독립성에 심대한 침해

가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던 것처럼 현 상태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 지금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의견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저희 위원들 사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둘러싼 현안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회의를 열었는데 MBC 문제에 대해서 언론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언론단체, 시민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 없이 지나갔다면 괜찮겠습니까? 저는 우선 시민사회 요구에 대해서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를 찾아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상식적인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면 정책당국으로서 최대한 그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 MBC 경영기구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얼마든지 딸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 나왔지만 2013년도 MBC 재허가할 때 노사관계의 정상화를 권고로 부대의견을 붙였습니다. 조건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권고사항입니다. 명문화된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또 편취, 파괴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일이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것입니다. 2012년 대파업에서부터 2014년 비밀회동 대화 내용 녹취록이 밖으로 알려진 그 과정에서 분명히 방송편성·제작에 대한 부당한 간섭, 침해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방송법 제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입니다. 제1항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제2항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할 수 없다. 그리고 아까 제3항 이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문제점은 처벌조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선언적인 것으로 그치는 것이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재와 처벌조항을 개정해서 넣어야 할 사항이지, 이것이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년간...

○ 최성준 위원장

- 참고로 제4조제2항은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러면 이것은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제작의 자율성은 외부로부터의 자유, 대외적인 자유뿐만이 아닙니다. 내부의 사주와 경영진 또 어떤 다른 세력으로부터의 자유와 독립, 대내적인 자유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 언론학계의 정설입니다. 더군다나 소유와 경영과 편성, 제작은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침해된 사건이 2012년 총파업에서부터 2014년 어간에 이루어진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방송의 기본정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정책을 수립해 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문제를 우리 직무가 아니라고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최대한, 물론 법규의 근거를 찾아봐야겠지만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바로 25일 문제가 제기된 당일 MBC 저녁 8

시 메인 뉴스에 말하자면 문제를 제기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 고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것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경찰이나 또 어디에서 내사,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송에서 보도한 지 5일이 지난 사건인데다가 그것이 우연이었습니까? 문제가 제기된 그날 내보냈다는 점에서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시민사회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전파방송의 사유화 아니냐, 자사이익을 위해서 이용된 것 아니냐? 자사도 아니지요. MBC 현 경영진, 이름이 거명된 두 분을 비호 또는 보호하기 위해서 동원된 것 아니냐, 이용된 것 아니냐? 이것은 바로 사회적 공기인 전파의 극단적인 사유화, 이기적인 이용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방기하고 지나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국회가 지금 다른 사안을 논의할 겨를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국회 미방위에서 문제제기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MBC의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요청을 하고 문제점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는 사람에 대해서 수사하는 의미의 조사가 아니고 전후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뿐입니까? 방송법 위반이 일어났으면 방송법을 관장하고 집행해야 할 정부기구로서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따져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선 방송법 제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침해됐다는 문제 제기가 일어났고 그 증거로 대화록이 유출됐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처 담당 국·과로 하여금 우선 방송문화진흥회에 자료요청을 하고 전후관계 진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도 다른 기타 안전이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여기에서 계속 논의를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안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4조제2항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처벌규정이 있지만 제4조제2항은 방송사 내부에서 편성의 개입, 관여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다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유사한 사례에서 이미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4조제2항에 의해서 저희가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방송문화진흥회 말씀하셨는데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해서는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와의 관계가 저희가 업무를 지시·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사의 임명과 예·결산서의 수령, 정관 변경, 인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이지, 저희가 그 업무에 관여를 해서 어떤 지시를 하거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 논의는 여기에서 계속 하기보다는 필요하시면 따로 일정한 일정을 잡아서 논의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안전...

○ 고삼석 상임위원

- 위원장님, 다른 안전 넘어가기 전에 위원장님과 이기주 위원님께서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 이야기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 이야기를 지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것만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더 이상 이야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반론을 해야 하고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 고삼석 상임위원

-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데 위원장님이 하지 말라고 하셔서 안 하려고 하는데….

○ 고삼석 상임위원

- 이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 이기주 상임위원

- 또 이야기하면 또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 말자고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여기에서 왜 하냐고요.

○ 고삼석 상임위원

-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모두 법에 근거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방통위원으로서 직무유기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사업계획서와 관련해서 이 내용을 임의로 또 이행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최근에 종합편성 PP를 저희가 제재했던 것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 내용과도 다릅니다. 저도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받아봤습니다만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요구'는 별도의 허가조건이나 부관사항에 없어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방송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영방송의 내부 규율 시스템이 지금 현재 작동하지 않고 있고, 또 외부로부터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붕괴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공영방송

이 다 망가진 다음에 저희들이 ‘이것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인가?’, ‘방송문화진흥회 업무인가?’, ‘KBS 이사회 업무인가?’ 이것을 따질 것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례로 이번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였느냐 하면….

○ 이기주 상임위원

- 고 위원님, 티타임에서 이야기를 하시든지 해야지, 여기에서 사전에 논의도 안 된 이야기를….

○ 최성준 위원장

- 그만 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생각이 다른 이야기를 계속 왜 하시냐고요?

○ 최성준 위원장

- 그 정도 하시고 지금 계속 논의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다시 김석진 위원님도 양해를 해 주시면….

○ 김석진 상임위원

- 저는 그래도 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셨으니까 짧게 말씀하실 기회를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저도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있는지를 그 정도는 윤곽을 밝히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대로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안의 성격을 다른 관점에서 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적인 술자리에서 자기 지인, 평소 잘 아는 지인과 이야기를 나눈 것이 녹취가 되었습니다. 사실 녹취록 육성을 직접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녹취록을 옮기는 과정에서 어떤 왜곡이 있었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고, 회사 측이 내놓은 이틀 전에 해명자료를 보면 “거두절미하고 왜곡되어서 상당히 발언의 진위가 잘못 알려져 있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문제가 됐던 본부장이 실제로 그것을 액션에 옮겨서 간부들에게 지시를 했다면 그것은 명백히 개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술자리에서 사적인 자리에서 일종의 토로를 하고 하소연 비슷하게 했다고 본인은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만 보면 그것이 실행에 옮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조사해 보면 나오겠지만 그 자리에 그런 권한을, 편성에 관여할 권한을 가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격렬한 노사 분류를 겪었던 당사자입니다. 그 당사자로서 170일간이라는 노사분류는 모두가 그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처가 굉장

히 깊습니다. 그 상처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심각한 후유증을 MBC 모든 구성원들이 노든 사든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우리가 보는 관점은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것을 봐야 하는 것이고, 어느 한 편의 주장을 그쪽으로 경사되게 봐서는 안 된다,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170일간의 격렬한 분규를 겪고 또 홍역을 치르고 그리고는 사법부에 송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사가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아직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심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한다든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MBC 모든 구성원들 노든 사든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꼭 4년 전 시점으로 다시 재발하지 않느냐 하는 굉장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방송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성원해 주고 힘을 보태주고 어떻게든 원활하게 되도록 그렇게 길잡이가 되어 주어야지, 또 다시 170일 그런 파업이 선거를 앞두고 또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정말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을 우리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경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2014년도에 있었던 약 2년 전의 일이라고 합니다. 2년 전의 일을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가 바로 총선을 두 달 보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이것이 터져 나온 것도 자칫 선거에 이용될 수 있다는 걱정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헤아리고 잘 살펴서 어느 특정 정파를 우리가 두둔할 필요도 없고 여기에서 정치적인 입장을 서로 간에 개진해서 우리가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되도록 우리 위원회가 정부기관인 만큼 공평하게 균형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해서 정파적인 주의 주장은 저는 개진하는 것은, 또 논쟁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애정 어린 눈으로... MBC 구성원들 모두가 상당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저는 전하고 싶고, 그래서 선거를 앞둔 시점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는 말씀을 보태고 싶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다른 안건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안건과 다른 안건이면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기초실장님께 여쭙 보겠습니다. 제12조 심의·의결사항의 제1호 방송 및 통신 규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궁금해서 여쭙 보는데, 어제 금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하셨지 않습니까?

○ **정종기 기획조정실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물론 우리가 자료도 준비하고 많이 설명을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홍보가 되는지,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지는 기자 분들, 언론의 소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침에 자세히는 안 봤지만 다른 부처들 업무계획은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 사항은 제가 다 안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얼핏 보니까 다른 부처에 비해서 보도 내지 홍보가 안 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정종기 기획조정실장

- 그런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제 생각은 어제 미래부도 오전에 업무계획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 부처가 같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분야 중심으로...

○ 이기주 상임위원

- 관심이 많기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관심이 제일 많지요. 제 이야기는 날짜를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닌가요? 미래부 뿐만 아니라 어제 보니까 교육부, 복지부 전부 다 이렇게 많이 나오던데... 방송통신위원회 금년도 업무계획은 고 위원님이나 부위원장님께서 엄청 노력해서 많은 내용을 담았는데 왜 이렇게 홍보가 잘 안 됩니까?

○ 정종기 기획조정실장

-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당초 우리가 금주 내 브리핑을 하기로 했는데 하필 오늘 날짜로 미래부가 출입기자들과 같이 다른 행사를 잡아서 기자들 입장에서 브리핑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힘들다고 해서 저희가 어제 오후로 날짜를 조정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업무계획이든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고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무처에서 브리핑 계획이라든가 언론 홍보계획을 준비할 때 그런 것을 보고안건이라도 간단하게 의견수렴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간도 많이 지연됐는데 한 번 여쭙 봤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MBC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아니면 후속 논의를 위해서 간담회라도 날짜를 하나 이 자리에서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월요일에 티타임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같이 논의를 하시지요.

○ 김재홍 부위원장

- 오늘 오후나 내일이나 시급한 현안 아십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이것이 지나간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논의를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없으시면 다음 회의는 2월 4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2016년도 제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48분 폐회 】